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1.	개 요 .....	437
	가. 수정예산(안) 편성 규모 .....	437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	438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	439
2.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 .....	440
3.	검 토 내 역 .....	440
	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	440
	나.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내역 .....	440
4.	검 토 의 건 .....	442

# 1. 개 요

## 가. 수정예산(안) 편성규모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편성규모는 2.5%가 증가한 7,948억 572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1억 9,526만 6천원인 3.9%가 증가된 5,877억 18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보다 1.4% 감액된 2,071억 384만원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94,805,726	100	775,556,690	100	19,249,036	2.5
○ 일반회계	587,701,886	73.9	565,506,620	72.9	22,195,266	3.9
○ 특별회계	207,103,840	26.1	210,050,070	27.1	△2,946,230	△1.4
- 공기업특별회계	186,524,660	23.5	186,524,660	24.1	-	-
· 공 영 개 발	57,306,536	7.2	57,306,536	7.4	-	-
· 지역개발기금	129,218,124	16.3	129,218,124	16.7	-	-
- 기타 특별회계	20,579,180	2.6	23,525,410	3.0	△2,946,230	△12.5
· 의료보호기금	15,820,457	2.0	18,766,687	2.4	△2,946,230	△15.7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2,558,723	0.3	2,558,723	0.3	-	-
· 대청호 특별회계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200,000	0.3	2,200,000	0.3	-	-

##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7,505억 5,669만원보다 2.5% 증가된 7,948억 572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1억 9,52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29억 4,623만원이 감액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94,805,726	100	750,556,690	100	19,249,036	2.5
· 지방세	132,041,000	16.6	132,041,000	17.0	-	-
· 세외수입	218,298,530	27.5	218,695,492	28.2	△396,962	△0.2
-경상적세외수입	9,710,828	1.2	9,710,828	1.3	-	-
-임시적세외수입	208,587,702	26.2	208,984,664	26.9	△396,962	△0.2
· 지방교부금	148,872,844	18.7	128,586,000	16.6	20,286,844	15.8
· 지방양여금	57,182,308	7.2	57,182,308	7.4	-	-
· 보조금	168,164,044	21.2	168,343,890	21.7	△179,846	△0.1
· 지정재원	70,247,000	8.8	70,708,000	9.1	△461,000	△0.7

###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199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본예산(안) 7,755억 5,669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21억 9,526만 6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9억 4,623만원이 감액된 총 7,948억 572만 6천원 규모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794,805,726	100	775,556,690	100	19,249,036	2.5
· 인 건 비	48,535,926	6.1	48,478,741	6.3	57,185	0.1
· 물 건 비	41,334,794	5.2	41,073,471	5.3	261,323	0.6
· 이 전 경 비	167,745,090	21.1	167,818,016	21.6	△72,926	△0.0
· 자 본 지 출	359,019,203	45.2	337,497,930	43.5	21,521,273	6.4
· 용 자 및 출 자	62,113,624	7.8	62,085,630	8.0	27,994	0.0
· 보 전 재 원	53,165,871	6.7	53,165,871	6.9	-	-
· 내 부 거 래	6,356,776	0.8	6,946,023	0.9	△589,247	△8.5
· 예 비 비 및 기 타	56,534,442	7.1	58,491,008	7.5	△1,956,566	△3.3

## 2. 수정예산(안) 편성사유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의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

## 3. 검토내역 및 의견

### 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기정예산(안) 5,655억 662만원의 3.9%인 221억 9,526만 6천원이 증가되어 5,877억 188만 6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검토한 바,

첫째, 세외수입에서 징수전망액이 당초보다 0.6%인 5억 728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증가된데 기인됨.

둘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당초 1,285억 8,600만원에서 202억 8,684만 4천원이 증액된 1,488억 7,284만 4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당초 1,535억 6,654만 1천원에서 18억 6,213만 7천원이 증액된 1,554억 2,867만 8천원을 계상한 것에 기인됨.

세째, 지방채는 당초 20억 800만원에서 4억 6,100만원이 감액된 15억 4,700만원임.

### 나.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내역

기정예산액 5,655억 662만원의 3.9%인 221억 9,526만 6천원이 증가되어 5,877억 188만 6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검토한 바,

첫째, 인건비는 기정예산(안) 479억 4,089만 2천원보다 5,718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병무행정 추진교부금이 증가된데 기인함.

둘째, 물건비에서 기정예산(안)의 0.6%인 2억 5,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정보서비스통신 이용료, 충북 100주년 기념행사비, 병무행정추진  
교부금등이 증액된데 기인됨.

셋째, 이전경비에서 기정예산(안)의 2.2%인 29억 52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으로는 체육지원기금조성지원, 능어촌 전화사업, 한일간 과학기술 협력  
조사 연구사업부담금등이 증액계상된데 기인됨.

넷째, 자본지출에서 기정예산(안)의 6.7%인 213억 2,127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송산교가설,  
광산공해방지시설, 대구확재정리사업등이 증액된데 기인됨.

다섯째, 용자 및 출자에서는 증감없음.

여섯째, 보전재원에서도 증감없음.

일곱째, 내부거래에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5억 8,924만 7천원이  
감액됨.

여덟째, 경정재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유보재원이던 예비비에서 19억 5,656만 6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임.

## 4. 검토의견

첫째,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정(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21억 9,526만 6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9억 4,62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연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들이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에 해당하는가와 제출시기가 적정한지 설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수정예산이 계상된 자체신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생략되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것은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의 일면이라 생각되어 차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에 대하여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재원은 당초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하여 출연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 내무부 교부세는 취소되고 순수도비로 출연토록 되어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회관 신축사업추진에 대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하는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총공사비 39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한 바 있고 또한 '95년도에도 현재 사업이 착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토지대입비 보상금 2억 5백만원과 설계비 5천 5백만원을 계상한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